

한·아프리카센터법안 (이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74
----------	------

발의연월일 : 2016. 10. 31.

발의자 : 이주영 · 신상진 · 심재권
김선동 · 여상규 · 이석현
김세연 · 이종배 · 강석호
이은재 · 오제세 · 김규환
의원(12인)

제안이유

아프리카는 경이적인 경제성장, 점진적인 정세 안정, 풍부한 자원과 개발인프라 확충 등으로 ‘떠오르는 대륙’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신흥 산유국을 중심으로 폭증하는 인프라 건설 수요, 풍부한 광물자원과 수산자원, 거대 소비시장 보유 등으로 인하여 우리 경제의 마지막 성장 동력이 될 전망임.

미국, EU 등은 아프리카와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고 중국, 일본, 인도, 터키 등도 빨리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자원, 무역 등 분야에서 아프리카 시장을 선점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 반면 우리의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무역과 투자는 전체 무역액과 해외 투자의 각 1.5% 미만에 머무는 등 최소한의 명맥만을 유지해 왔음.

금년 5월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 및 아프리카 연합(AU)에서

의 연설을 계기로 정부차원에서도 대 아프리카 외교강화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외교에 관하여 거의 유일한 국내 주무부서라 할 수 있는 외교부 아프리카과는 10명 미만의 인원을 가진 작은 조직에 불과해 급증하는 아프리카 외교에 대한 국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우며, KOTRA, KOICA, 수출입 은행 등 공공기관의 아프리카 관련 업무는 전체 기능의 일부로 수행됨으로써 아프리카에 특화된 조직이나 연속성을 가진 전문 인력은 부족함. 또한 아프리카 관련 업무는 외교, 경제, 통상, 개발 협력 분야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우리 정부는 아프리카와 각료급 포럼을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 통상부가 각각 개최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아프리카 관계 활성화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한 부처간 업무 관련 정보 교환과 조정, 협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한·아프리카 센터’를 설립, 아프리카 대륙 관련 전문성을 구비한 조직을 구축하여 우리 정부의 아프리카 관계 활성화를 지원하고 민간 교류와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등 경제 관계 확대에 역할을 하며 부처 간 업무의 연결과 소통, 효율적 협업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아프리카센터를 설치하여 대한민국과 아프리카국가와

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아프리카국가와의 경제·통상관계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한·아프리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센터는 아프리카국가 관련 사업의 발굴 및 추진, 아프리카국가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기업의 아프리카국가 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및 그 밖에 대한민국과 아프리카국가 간의 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함(안 제7조).

라. 센터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함(안 제8조).

마. 센터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센터는 정부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운영함(안 제15조).

사. 정부는 센터의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센터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함(안 제16조).

아. 외교부장관은 센터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및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자. 센터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5조).

차. 이 법에 따른 센터가 아닌 자는 한·아프리카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6조).

한·아프리카센터 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아프리카센터를 설치하여 대한민국과 아프리카 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아프리카 국가와의 경제·통상관계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아프리카국가”란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하는 국가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국가를 말한다.

제3조(법인격) 한·아프리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 ① 센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사무소의 설치) 센터는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센터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업무)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프리카국가와 관련된 사업의 발굴 및 추진
2. 아프리카국가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3. 기업의 아프리카국가 시장 진출 지원
4. 민간 단체의 아프리카국가 진출 지원
5. 아프리카국가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내 홍보

6. 아프리카국가와의 교류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대한민국과 아프리카국가 간의 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임원) ① 센터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 학계 등 의 인사 중에서 아프리카국가와의 교류·협력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상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센터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센터의 임원(비상근 이사 및 감사는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외교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이사회) ① 센터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직원의 임면) 센터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4조(공무원의 파견) ① 센터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재원)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1. 제16조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2. 그 밖의 수입금

제16조(출연금 등) ① 정부는 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사업연도) 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결산서의 제출) 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센터의 지도·감독 등) ① 외교부장관은 센터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센터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1조(비밀엄수 의무) 센터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센터가 아닌 자는 한·아프리카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3조(「민법」의 준용) 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센터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한·아프리카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센터의 설립준비) ① 외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센터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센터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외교부장관이 부담한다.